특별장학생 학사시행세칙

제정 2012. 3. 1 폐지 2017. 6. 1

- 제1조(목적) 이 세칙은 본 대학 장학규정 및 장학규정시행세칙에 명시한 특별장학금 지급대상자의 선 정과 효과적인 학사관리를 위하여 특별장학생의 학사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.
- 제2조(특별장학생 선정 및 지급) ① 특별장학생은 장학규정과 장학규정시행세칙에 규정된 장학금 이외에 총장이 장학금의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특별장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선정 한다.
 - ② 특별장학금은 재학기간 중 연속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, 연속 수혜조건은 직전학기 성적이 3.5이상을 원칙으로 하되, 미충족 시 스쿨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별도의 심의를 걸쳐 예외로 인정 할 수 있다.
- 제3조(특별장학생지도위원회) ① 특별장학생의 선정 및 효과적인 학사지도를 위하여 특별장학생지도 위원회를 두며, 교무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.
 - ② 위원회는 다음사항을 심의한다.
 - 1. 특별장학생 선정에 관한 사항
 - 2. 특별장학생의 성적평가에 관한 사항
 - 3. 기타 학사지도에 관한 사항
- 제4조(교과운영) 특별장학생의 교과운영은 일반학생과 구분하여 별도로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.
- 제5조(성적평가) ① 특별장학생이 수강한 교과목에 대한 성적평가는 학칙 제31조(성적) 및 학칙시행세 칙 제27조(성적평가)에도 불구하고 활동실적, 국가와 학교에 대한 기여도 및 기타 내용을 산정기준으로 별도로 평가 할 수 있다.
 - ② 스쿨은 특별장학생의 상황에 맞는 특별장학생 성적평가 기준을 별도로 제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
- 제6조(준칙) 이 세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에 따른다.

부 칙

이 세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이 세칙은 2017년 6월 1일부터 폐지한다.